

# 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 PLS제도 본격 시행

허가된 제품사용, 동물용의약품 사용수칙 철저

국내에서 축산업에 사용되는 모든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등록·허가된 잔류물질(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을 0.01mg/kg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호주, EU,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잔류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준비에 들어갔다. 이후 2016년 농약 분야에서 수입산물 단속을 위해 일부 농산물에 PLS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축산물로 확대된 결정적인 사건은 2017년도에 터진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이었다. 정부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축·수산물로 PLS를 확대키로 하면서 2021년 6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금년에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적용되는 주요 품목은 소, 돼지, 닭, 우유, 계란 및 어류 등이며, 그동안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던 농약과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 mg/kg 이하(단 성장보조제 및 스테로이드성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로 규정하게 되었고 그 외 식용동물은 순차적으로 CODEX기준, 유사 식용동물의 잔류허용기준 중 해당부위의 최저기준, 항균제의 경우 0.01 mg/kg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기대효과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원천적 차단은 물론 외국에서 부적합된 축산물이 국내에서 적합으로 수입, 유통되는 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보았다. 현재 식약처에 식품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은 2023년 12월 기준 212종이 올라와 있다. 정부는 시행 첫해인 만큼 축산물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계란 생산자들은 이미 지난 2017년도 ‘계란 살충제 검출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사례가 있어, 이미 허가되지 않은 농약사용을 일체 하지 않고 허가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과거를 상기하여 주지해야 할 것이다. 농가에서는 수의사 처방을 통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고 동물약품사용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 다시 찾아온 고병원성 A

다시 부각되는 계란수입

고병원성 A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과거의 경우 철새가 가장 많이 찾아든다는 12월과 1월에 폭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볼 때 금년에도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기세다. 이미 21일 기준 농장에서 20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산란계 농장이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160만수의 산란계가 매몰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 나타나는 바이러스가 H5N1형과 H5N6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2016/17년 H5N6형과 H5N8형이 동시 발생하면서 장기간 큰 피해를 가져왔던 시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를 더해주기 때문이다.

5년만에 다시 고개를 든 H5N6형의 경우 감염 후 폐사될때까지 일정기간(닭 2.6일, 오리 4.6~7.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닭 상태를 예의주시해야 감염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특히, 어린 일령에서 일찍 폐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오리에서는 폐사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고 있다.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외 비교적 닭이나 오리에서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 등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번에 발생한 농장중 사경(신경증상, 목이 돌아감) 등의 임상증상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다방면으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A 확산에 따른 물가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신선란 112만 개, 67톤을 1월부터 수입한다고 밝혔다. 닭고기도 내년 1분기에 추가 할당 관세 물량 3만 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A가 발생하면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계란수입은 수차례 경험한 것처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수입된 계란 재고품들이 다시 폐기처분되는 그런 사태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국내에 상륙한 고병원성 A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농가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 **양계**